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5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및 상담전문요원 배치 규정 신설

다. 보육시설 위탁 제한 규정 정비

라.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삭제

마. 보조금 반환 사유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제6호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정의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신규확충이 중단되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한 본 조례 안 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삭제 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조제4항에 간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본 조례 안 제9조제3항에 수정 보완하였으며,

- 안 제7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9조제3항은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 간사 임명사항을 수정하여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2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을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 안 제13조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7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을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일치시켰고, 안 제19조제4항은 안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근거 없이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24조 및 제28조의 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 안 제5장 제29조 및 제30조의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만 지원되고,
신규 확충이 중단됨에 따라 5장 각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2조 보조금 반환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예방함으로써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3.6.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8.13., 2015.5.18.>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9.1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01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p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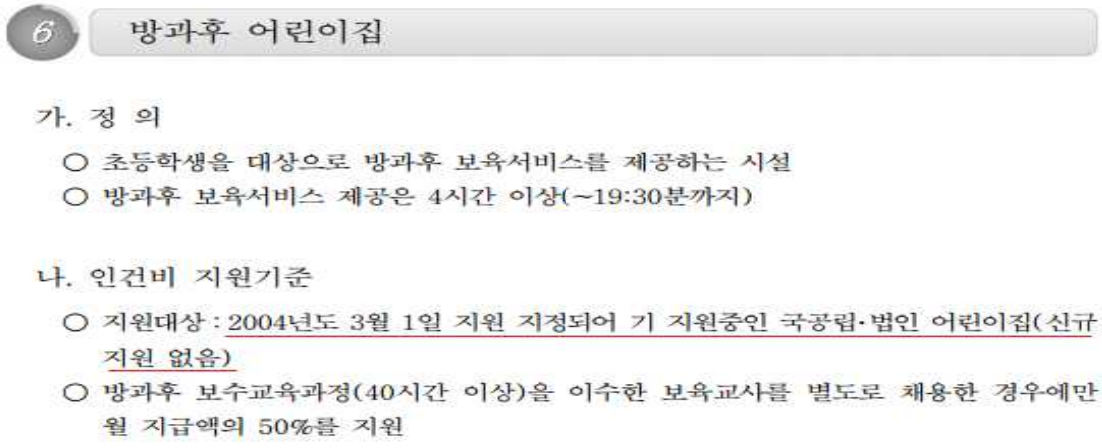
6 방과후 어린이집

가.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신규 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위탁 (p42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업무위탁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 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